

# 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

[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 ]

## 1.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- 가. 제품명 : DISPERBYK-115
- 나. 제품의 용도 및 사용상의 제한
- 1)제품의 용도 : 습윤분산제
  - 2)사용상 제한 : 자료없음
- 다. 제조자 정보
- 1)회사명 : BYK-Chemie GmbH
  - 2)주소 : Abelstrasse 45, 46483 Wesel, Germany
  - 3)전화번호 : +49 281 670-0
  - 4)담당자 : Regulatory Affairs
  - 5)긴급연락처 : +49 281 670-23532
- 라. 공급자 정보
- 1)공급회사명 : 유니소재(주)
  - 2)주소 :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581
  - 3)전화번호 : (031) 766-8341
  - 4)담당부서 : 영업부
  - 5)담당자 : 전명진

## 2. 유해, 위험성

- 가. 유해, 위험성 분류
- 1)물리적 위험성 분류 : 인화성 액체 구분3
  - 2)건강 유해성 분류 : 피부 자극성 구분2
  - 3)환경 유해성 분류 : 해당없음

나.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
1)그림문자



- 2)신호어: 경고
- 3)유해, 위험 문구  
인화성 액체 또는 증기  
피부에 자극을 일으킴
- 4)예방조치문구  
-예방  
열 · 스파크 · 화염 · 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- 금연  
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
-대응  
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시오  
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 
화재시 불을 끄기 위해 건조모래, 분말소화제 또는 내알코올성 거품을 사용하시오  
-저장  
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 
-폐기

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내용물, 용기를 폐기하시오  
 다. 유해, 위험성 분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. 위험성  
 -NFPA 지수: 보건-2 화재-3 반응성-0

### 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 및 관용명	CAS 번호	함유량(%)
Solution of a high molecular weight block copolymer with pigment affinic groups	영업비밀	52.7
Xylene	1330-20-7	23.3
ethylbenzene	100-41-4	9.6
n-butyl acetate	123-86-4	6.9
2-methoxy-1-methylethyl acetate	108-65-6	7.5

### 4. 응급조치 요령

- 가. 눈에 들어갔을 때 : 흐르는 물에 세척할 것. 콘택트 렌즈를 제거할 것.  
손상되지 않은 눈을 보호할 것. 행구는 동안 눈을 크게 뜰 것.  
만약 자극이 계속 되면 전문의와 상담할 것.
- 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 : 오염된 옷과 신발은 즉시 벗을 것. 비누와 충분한 물로 세척할 것  
징후가 계속 될 경우 의사와 상담할 것.
- 다. 흡입했을 때 :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것.  
의식이 없을 경우 회복이 가능한 자세와 의사의 조언을 구할 것  
징후가 계속 될 경우 의사와 상담할 것.
- 라. 섭취했을 때 : 입을 행글 것. 기도를 깨끗이 유지할 것  
우유나 알콜음료를 먹지 말 것.  
의식이 없을 경우 입안으로는 아무것도 넣지 말 것.  
징후가 지속될 경우, 의사와 상담할 것.
- 마.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/영향 : 자료없음
- 바.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: 진료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의사에게 보일 것.  
위험한 지역으로부터 벗어날 것  
지켜줄 사람이 없는 환자의 곁을 떠나지 말 것

### 5. 폭발, 화재시 대처방법

- 가. 적절한(부적절한 소화제) : 내알콜성 거품, 이산화탄소, 분말소화제  
-부적절한 소화제: 고압 물 분사
- 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: 연소시 자극성 증기 발생
- 다.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: 산소호흡기가 부착된 방화복 착용 및 특수보호장비  
사용할 것  
밀폐된 용기를 완전히 냉각시키기 위해서 물을  
분무할 것(화재진압을 위해 6방향 참조)  
오염 된 방화수는 분리하여 수거할 것.  
본 방화수가 배수구에 배출되지 않도록할 것.  
화재 잔재 및 오염 된 방화수는 지역 규정에 따라  
폐기할 것.

### 6.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

- 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: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 
사람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킬 것

발화원을 모두 제거할 것  
폭발 형성을 유도하는 증기의 축적을 예방할 것  
(증기는 낮은 지역에서 축적될 수 있음)

- 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: 누출물이 하수구 혹은 지표수/지하수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 
누출량이 많을 경우 119나 환경부, 지방환경관리청, 시/도(환경지도과)에 신고할 것
- 다. 정화 또는 제거방법 : 누출물을 수거할 것  
모래, 규조토, 톱밥과 같은 흡착제로 누출물을 흡착시켜 수거할 것.  
적절한 장비를 이용하여 수거할 것  
폐기물 관리법(환경부)에 의거 처리할 것

## 7. 취급 및 저장 방법

- 가. 안전취급요령 : 작업장 내 노출제한 기준을 초과하지 말 것.  
에어로졸 형성을 피할 것  
증기/분진을 흡입하지 말 것  
눈과 피부에 접촉하는 것을 피할 것. (신체보호 위해 8번항 참고)  
작업장 내 흡연 및 취식을 금함.  
용기는 완전히 밀봉하여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보관할 것  
작업장을 충분히 환기시키고 폐수는 적절한 기준에 맞추어 처리할 것  
드럼 개봉시 낮은 압력에서 조심스럽게 사용할 것  
지역과 국가규정에 의거 물로 씻어 처분할 것  
화재 및 폭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보:  
- 발화원으로부터 멀리할 것, 금연  
- 열로부터 보호할 것  
- 정전기로부터 보호할 것
- 나. 보관 방법 : 어떤 다른 백열성의 물질 또는 노출된 불꽃에서 뿌리지 말 것  
인화성물질로부터 격리하여 보관할 것, 금연  
용기는 완전히 밀봉하여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보관할 것  
습기 및 수분으로부터 보호할 것  
건조되지 않도록 할 것  
라벨예방문구를 확인할 것  
전자설비 혹은 작업원료는 물질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취급할 것

## 8. 노출 방지 및 개인보호구

- 가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- 1) 국내규정
- Xylene  
TWA - 100ppm, 435mg/m<sup>3</sup>  
STEL - 150ppm, 655mg/m<sup>3</sup>디메틸벤젠(오르토, 메타, 파라 이성체)
  - n-butyl acetate  
TWA - 150ppm, 710mg/m<sup>3</sup>  
STEL - 200ppm, 950mg/m<sup>3</sup>
  - ethylbenzene  
TWA - 100 ppm 435 mg/m<sup>3</sup>  
STEL - 125 ppm 545 mg/m<sup>3</sup>

2)ACGIH 규정

-Xylene

TWA - 100ppm

STEL - 150ppm

-n-butyl acetate

TWA - 150ppm

STEL - 200ppm

-ethylbenzene

TWA - 20 ppm

3)생물학적 노출기준

-자료없음

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 : 지역배기장치 또는 공기 중에 추천된 노출하한 이하로 비산입자를 조절할 수 있는 공학적 조절장치, 먼지, 연기, 연무 등이 생겼을 시 비산된 것이 노출제한 이하로 되도록 배기장치를 사용할 것

다. 개인보호구

1)호흡기 보호 : 적절한 방독마스크를 착용할 것.

2)눈 보호 : 보호안경을 밀착 착용할 것  
눈 세척용 정제수를 준비할 것.

3)손 보호 : 장갑재질 :  
- 적절한 장갑을 선택하는 것은 재질 뿐 아니라 품질의 추가 인증에도 관련이 있으며 제조자에 따라 다양함  
- 본 제품은 몇 개의 물질로 이루어진 제재이므로 장갑 재질의 내성을 미리 계산할 수 없으며 사용 전에 확인하여야 함  
장갑 재질의 침투시간 : 240분 (Material: 4H)

4)신체보호 : 적합한 내화학성 보호의(불침투성 보호의)를 착용할 것

라. 위생상 주의사항 : 휴식 전 및 작업 종료 시에 손을 씻을 것  
작업 중 취식, 취음, 흡연하거나 냄새를 맡지 말 것  
음식물, 음료 및 사료와 격리하여 보관할 것  
모든 오염된 의복은 즉시 벗을 것

9. 물리. 화학적 특성

가. 외 관 : 물리적 상태: 액상, 색상: 황색

나. 냄새 : 용제 냄새

다. 냄새역치 : 자료없음

라. p H : 자료없음

마. 녹는점/어는점: 자료없음

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: 124℃

사. 인 화 점 : 24℃

아. 증 발 속 도 : 자료없음

자. 인화성(고체,기체): 자료없음

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: 10.8%(V)/ 1.0%(V)

카. 증 기 압 : 8 hPa at 20℃

타. 용 해 도 : 물에 불용성

파. 증 기 밀 도 : 자료없음

하. 비 중 : 0.96g/cm3 at 20℃

거. N-옥탄올/물 분배계수: 자료없음

너. 자연발화 온도: >300℃

더. 분 해 온 도 : 자료없음  
 러. 점 도 : 자료없음  
 며. 분 자 량 : 자료없음

**10. 안정성 및 반응성**

가. 화학적 안정성 : 열분해  
 - 설명서에 따라 사용할 경우 분해없음  
 - 설명서에 따라 사용하고 저장할 경우 분해없음  
 나.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: 열, 화기, 불꽃  
 증기는 공기와 혼합시 폭발형성을 일으킬 수 있음  
 다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: 탄소산화물, 질소산화물  
 라. 반응시 유해물질 발생가능성 : 자료없음

**11. 독성에 관한 정보**

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
 1)호흡기를 통한 흡입 : 자료없음  
 2)입을 통한 섭취 : 자료없음  
 3)피부 접촉 : 자료없음  
 4)눈 접촉 : 자료없음  
 나. 단기 및 장기노출에 의한 지연,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  
 1)급성독성  
 -경구: 자료없음  
 경피: Acute toxicity estimate: > 2.000 mg/kg  
 Method: Calculation method  
 흡입: Acute toxicity estimate: > 20 mg/l  
 Method: Calculation method  
 2)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: 자료없음  
 3)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: 자료없음  
 4)호흡기과민성: 자료없음  
 5)피부 과민성: 자료없음  
 6)발암성: 자료없음  
 7)생식세포 변이원성: 자료없음  
 8)생식독성: 자료없음  
 9)특정표적장기독성(1회 노출): 자료없음  
 10)특정표적장기독성(반복노출): 자료없음  
 11)흡인유해성: 자료없음

**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**

가. 수생, 육생 생태독성  
 1)어류: 자료없음  
 2)갑각류: 자료없음  
 3)조류: 자료없음  
 나. 잔류성 및 분해성  
 1)잔류성: 자료없음  
 2)분해성: 자료없음  
 다. 생물 농축성  
 1)생분해성: 자료없음  
 2)농축성: 자료없음

- 라. 토양 이동성: 자료없음
- 마. 기타 유해 영향: 자료없음

### 13. 폐기시 주의사항

- 가. 폐기물관리법상규제현황 : 지정 폐기물임
- 나. 폐기 방법 : 제품은 지방법에 저축이 안될 경우 소각처리할 수 있으며 빈용기는 등록업체에 의해 처리해야 됨
- 다. 폐기시 주의사항 : 남아있는 내용물은 비울 것  
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폐기 처리할 것  
 빈 용기는 재사용하지 말 것  
 빈 용기는 태우거나 절단토치를 사용하지 말 것  
 폐수를 하수구로 배출하지 말 것.  
 화학물질, 사용한 용기로 연못, 수로, 도랑을 오염시키지 말 것

### 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- 가. 유엔번호(UN NO.) : 1993
- 나. 적정선적명 : ADR/RID, IMDG, IATA-DGR  
 -FLAMMABLE LIQUID, N.O.S. (Xylene, n-Butylacetate)
- 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: 3
- 라. 용기 등급 : III
- 마. 해양오염물질 : 없음
- 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:  
 -화재시 비상조치: F-E  
 -유출시 비상조치: S-E

### 15. 법적 규제 현황

- 가.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규제 : n-butyl acetate  
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(측정주기 : 6개월)  
 관리대상유해물질  
 노출기준설정물질  
 Xylene, Ethylbenzene  
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(측정주기 : 6개월)  
 관리대상유해물질  
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(진단주기 : 12개월)  
 노출기준설정물질
- 나. 화학물질등록평가법(화평법) 및 화학물질관리법(화관법)에 의한 규제:  
 사고대비물질: 해당없음  
 금지물질: 해당없음  
 허가물질: 해당없음  
 제한물질: 해당없음  
 유독물질: 해당없음
- 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제4류 제2석유류
- 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 지정폐기물
- 다. 기타 외국법에 의한 규제

1999/45/EC, 67/548/EEC에 의한 분류 :

R PHRASES

R10 - 가연성

R11 - 고인화성

R20 - 흡입하면 유해함

R20/21 - 흡입 및 피부 접촉시 유해함

R38 - 피부에 자극적임

R65 - 유해성: 삼키면 폐에 손상을 줄 수 있음

R66 - 반복 노출은 피부 건조 또는 갈라짐을 유발할 수 있음.

R67 - 증기는 졸음과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음

S PHRASES

-

16. 기타 참고 사항

가. 자료의 출처

BYK-Chemie GmbH 에서 작성한 영문 MSDS

KOSHA(한국안전관리공단)

NCIS(화학물질정보시스템)

NITE(일본,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)

EU Directive 67/548/EEC(Annex-I)

나. 최초 작성일자: 2008년 3월 31일

다. 개정횟수 및 최종개정일자: 2016년 09월 29일(REV 3)

라. 기타: 해당없음

\* 이 MSDS는 현재 BYK-Chemie사의 최선의 지식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며, 이것이 제품의 특성을 보증하기 위해 작성된것은 아님.